

수의사 면허증 []재발급 []재부여 []갱신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면허번호	면허일	년	월	일
------	-----	---	---	---

신청인	성명	한글	한문		
		영문			
	전화번호			휴대전화	
	주소				
	자격	년	월	일	시행 제 회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
	출신학교	졸업일		년	월

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의사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됨으로 인한 재발급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의사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한 재발급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의사 면허증 갱신 <input type="checkbox"/> 면허재부여
----	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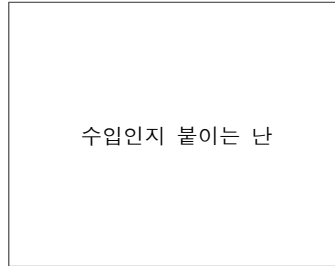
「수의사법 시행규칙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의 []재발급 []재부여 []갱신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

첨부서류	<p>1. 재발급의 경우</p> <p>가. 잃어버린 경우: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(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. 이하 같습니다) 1장</p> <p>나. 헐어 못 쓰게 된 경우: 해당 면허증과 사진 1장</p> <p>다.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: 해당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사진 1장</p> <p>2. 재부여의 경우: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1장</p> <p>3. 갱신의 경우: 면허증(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)과 사진 1장</p>	수수료 2,000원(갱신의 경우에는 면제됩니다)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근거 법령

<수의사법 시행규칙>

제4조(면허증의 재발급 등)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잃어버린 경우: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(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) 1장
2. 헐어 못 쓰게 된 경우: 해당 면허증과 사진(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) 1장
3.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: 해당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사진(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) 1장
4.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경우: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(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) 1장

제5조(면허증의 갱신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, 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발급 신청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(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)과 사진(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) 1장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처리 절차

